

변경대비표

■ 변경대상 : 하나UBS 안정성장1월호 증권투자신탁[주식]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33조(이익분배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
제39조(보수)	<p>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6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	<p>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<u>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일로부터 매 6개월간으로</u>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u></p>
부 칙	(신 설)	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- 소득세법 개정(2009.7.1)사항 반영 :</p>

		<p>이익분배금 조항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09.12.21) 사항 반영: 운용보고서 등 발송 방법 변경-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 변경 :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6개월간 →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일로부터 매 6개월간
--	--	---